

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05399      |
| 의 퇴 인  | 성일종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 | 2024. 12. 3. |
| 추 계 번호 | 24B4936      |

#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66조의2<br>신설(양식업구조<br>개선계획)  |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(이하 “양식업구조개선계획”이라 한다)을 세우고 이에 <u>필요한 재원을 확보</u>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66조의6<br>신설(양식업자에<br>대한 지원) | <p>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66조의5에 따라 폐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양식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</p> <p>1. 양식시설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</p> <p>2.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 지원금</p> <p>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양식업 구조개선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</p> <p>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식업을 폐업한 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</p> <p>1. 직업 교육·훈련</p> <p>2. 고용정보 제공,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</p> <p>3.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</p> <p>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p> | 재량규정 |
| 3  | 안 제66조의8<br>신설(감정평가<br>등)      |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폐업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에 관한 전문조사연구·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66조의2<br>신설(양식업구조 | <p>• 제3호:</p> <p>－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</p>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| 개선계획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어려운 경우    |
| 2  | 안 제66조의6<br>신설(양식업자에<br>대한 지원) |           |
| 3  | 안 제66조의8<br>신설(감정평가<br>등)      |           |

## 2. 상세 사유

### 가. 양식업계 경영현황

-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양식업계는 고유가 지속, 전기요금 인상, 사료비 증가 등으로 양식업계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추세
  - 현재 양식업계 구조개선 관련 사업은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, 이에 따른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음
  - ※ [참고자료] 양식업계 경영현황 참고

나. 양식업구조개선계획 및 필요한 재원 확보(안 제66조의2 신설),  
양식업자에 대한 지원—양식시설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등(안 제66조의6 신설),  
감정평가 등(안 제66조의8 신설)

-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, 양식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, 타업종으로의 전업 및 취업 지원, 폐업지원금 확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 - 양식업구조개선계획 수립 및 필요한 재원 확보
  - 양식업 폐업에 따른 지원 등
    - － (매입지원금) 양식시설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

- (폐업지원금)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
-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
- 타업종으로의 전업 및 취업지원 (직업 교육·훈련, 고용정보 제공,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,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 등)
- 전문조사연구·교육 기관 또는 감정기관에 폐업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한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 의뢰

-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양식업 구조 개선이 필요한 양식업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, 구조개선 대상으로 지정된 양식업을 영위하는 양식업자 중 폐업 대상자의 인원과 폐업 대상자별 양식시설(감정가격), 3년 평년수익액을 고려한 폐업지원금 규모, 기타 직업 교육·훈련 등 업종 변경과 재취업에 필요한 예산 사업 규모 등이 산정되어야 함
- 그러나 향후 구조개선 대상으로 지정할 양식업 및 목표량에 관한 기준, 양식업 종류별 양식시설 및 평년수익액, 교육·훈련 등 업종 변경과 재취업에 필요한 예산 사업 규모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### 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☐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이주호 | 배아형 |

☐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|
| 이주호 | 02-6788-3746 | progress@nabo.go.kr |

## [참고자료] 양식업계 경영현황

(해양수산부 제출자료)

### □ 어가경제

- 어가 평균소득은 5,478만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,405만원 대비 72% 수준에 불과하며, 어가부채는 작년 대비 11.3% 증가\*하는 등 다수의 영세어업인들은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음

\* 출처: 통계청,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

### □ 경영여건

- 고유가가 지속\*되고 있으며, 전기료 인상\*\*, 사료비 증가 등으로 양식 경영여건은 악화되는 추세

\* 어업용 경유가격(원/L): ('20) 455 → ('21) 603 → ('22) 1,149 → ('23) 1,115  
→ ('24) 1,115

\*\* '21년 1월 대비 농사용(을) 전력량 요금 73.9% 인상, '25년 6.4원/kWh 추가 인상 예정

### □ 양식수산물 수급

- 해외시장 열풍이 있는 '김'을 제외한 대부분 양식품목의 시장 규모는 정체중으로, 고수온 등 기후변화로 대규모 폐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양성물량이 적체되어 있어 양식수산물 가격 변동은 제한적

< 주요 양식품목 고수온 피해량 및 가격 >

| 구분 | '24년 고수온 피해신고량<br>( '24.10월 기준 ) | 산지가격 ( 원/kg ) |         |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2.10월       | '23.10월 | '24.10월 |
| 우럭 | 3,848만마리                         | 17,125        | 12,000  | 17,000  |
| 굴  | 17,071줄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,532        | 8,271   | 8,658   |
| 전복 | 3,743만마리                         | 35,710        | 26,580  | 21,739  |

\* 출처: 해양수산부 내부 통계자료, KMI 수산업관측센터

### □ 고수온 피해복구

- 고수온에 따른 양식생물 폐사 등 피해 발생 시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'재해복구비'('24년 1~2차, 217억원), '양식재해보험비' 등을 지급 중으로, 매년 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수백억의 예산 집행 중

## □ 향후계획

- 양식품목별 양식 적합지를 고려한 양식장 재배치·폐업,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양식품종으로 전환 등 '양식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